탄 원 서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귀중
사 건 2026고합56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노규호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탄원 취지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무죄 선고 요청

---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된 과정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바람과 함께,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규호의 형사책임은 그의 구체적인 지시와 인식, 실제 발생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개된 공소사실 관련 보도만으로 수사기관의 주장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설명도 증거 없이 사실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정까지 정면으로 살피되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2. 지시와 보고의 순서를 확인하되 불확실한 시각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3년 8월 2일 국수본과 경북경찰청 사이에 사건기록 반환 관련 연락이 있었고, 노규호는 실무진과 기록 인계 방안을 논의하며 국방부 관계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기록은 당일 국방부 검찰단 측에 인계되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경과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공소장에 적힌 연락 순서가 곧바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아닙니다.

실무진의 우려 보고, 공문 접수 건의, 상급기관의 연락, 국방부 관계자와의 협의, 최종 반환 결정 중 무엇이 먼저 있었고 각 단계에서 피고인이 새로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통화·전자문서·업무기록과 증인의 법정 진술로 가려져야 합니다. 언론에 소개된 분 단위 시각을 정확히 확인된 사실처럼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의사결정 순서와 지시 내용에 대한 심리는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문 미접수 지시와 실무진의 반대 건의는 핵심 쟁점입니다

공소장 보도에서 가장 불리하게 제시되는 사정은 실무진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도 노규호가 온-나라 공문을 접수하지 말라고 거듭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공보 절차를 중단시켰고 실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단지 법률 해석상의 이견이었다고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 건의의 정확한 내용, 당시 법적 근거의 설명, 피고인이 제시한 반대 이유, 지시가 일시적 검토 보류였는지 최종적인 접수 거부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진이 위법 가능성을 명확히 알렸고 이를 알면서도 접수를 막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진의 이견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어떤 권리행사방해 결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를 노규호가 인식·용인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공문 미접수 지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문서 수신과 사건 수리, 실물 기록의 인수 및 정식 수사 개시가 제도상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형법 제123조의 결과 요건을 대신하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국방부 관계자와의 협의 및 외부 지시 인식 여부

특검 측은 노규호가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공문 미접수 및 KICS 미등록 상태를 거론했고, 그에 따라 기록을 회수하도록 협의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률 근거가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정식 반환 요청 공문이 없다는 사정을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피고인이 그 협의에 따라 어떤 새로운 지시를 내렸는지까지 확인해야 통화의 법률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규호 측은 대통령실의 지시라는 설명을 당시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인지 검증되어야 하며, 외부 연락에 관여한 사람들의 보고 문구와 통화 기록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요청이 시작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설명과, 그 사정을 노규호가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부당한 반환을 실행하려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5. 당시 군사법원법과 기록 접수의 의미를 엄밀히 적용해야 합니다

2023년 당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민간 관할 규정과 제228조 제3항의 사건 이첩 규정, 그리고 관련 대통령령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의 수사·이첩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군 수사단의 경찰 이첩을 군 내부의 보류 지시만으로 취소할 수 있었는지, 경찰 측 접수 처리 여부가 이첩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합니다.

온-나라 공문의 접수 여부나 KICS 미등록 상태를 기록 반환의 당연한 법률상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어떤 조항을 근거로 의견을 구했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는 당시 피고인의 실제 인식을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적 견해 차이 주장만으로 모든 지시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며, 사후적 위법 판단만으로 범죄 고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6. 공문 반송·사본 파기와 기록 인계의 행위별 책임

공개된 특검 조사 관련 보도에는 이첩 공문 반송과 사건기록 사본 파기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행위 유형과 법률상 의무가 다르므로 누가 실행했는지, 노규호가 직접 지시했는지, 관련 문서의 보존·처리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록 인계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수행위까지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공문 미접수와 기록 회수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서로 다른 행위를 포괄적으로 한 덩어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거가 각각 어떠한 행위와 인식의 범위를 뒷받침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직권남용의 결과, 인과관계 및 개별 고의

형법 제123조 및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 기소 관련 보도는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권리행사 방해를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노규호의 특정 지시가 누구의 어떤 수사를 실제로 제한했는지에 관한 증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계획된 조사·압수수색 등 수사행위가 무엇이었고 그 진행이 어떤 사유로 멈추거나 지연되었는지, 관련 기록의 반환이 그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나중에 수사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방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지 접수를 보류하거나 기록을 인계했다는 사실과 범죄의 완성을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공소장에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실무자의 행위가 그 당시의 직무 범위와 규정상 의무를 벗어났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결과 유형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언론에 언급된 부수행위를 미기소된 별개의 유죄 사유처럼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공모 역시 국수본·국방부·경북경찰청 간 연락의 존재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연락과 각자의 역할에 관한 증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8. 무죄 요청과 예비적 참작

노규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도된 공문 미접수 지시와 실무진의 이견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정한 심리 끝에도 특정 권한의 위법·부당한 행사, 수사권 행사 방해 결과, 인과관계와 이에 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일 재판부가 일부 형사책임을 인정한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당시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권한, 구체적 지시의 범위, 실제 결과 및 다른 관계자의 관여 정도 등 확인된 사정만을 양형에 참작해 주시기를 예비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는 혐의를 시인하거나 무죄 요청을 철회하는 뜻이 아닙니다.

맺음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과 모든 피고인에게 공정한 형사재판을 보장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혹도 빠짐없이 검토하시되,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법률상 추정을 구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규호 개인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의 증명이 끝내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법률·판례: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2023년 당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및 제228조 제3항;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자료 참고: 연합뉴스(2026. 8. 13. 기소 보도), 뉴스1(2026. 8. 26. 공소장 보도), 뉴스핌(2026. 10. 15. 첫 공판 보도). 이 보도에 소개된 수사기관의 주장은 법원이 확정한 사실과 구별됩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